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세 무 과)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세무과장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세 제도의 연구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지방세제의 선진화와 재정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98억8429만3000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798만6000원입니다.

※ 출연금 산출 내역: 149,884,293천원(결산액)×1.2/10,000=17,986천원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98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출연

3. 출연 심의 요구서: 붙임

4. 참고자료

- (1)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
- (2) 연구원 이사회 명단 및 임기
- (3)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추진 방향
- (4) 관계법령

출연 심의 요구서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강 성 조) ○ 일반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현원/정원) 71명/88명 (주요사업)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업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17,986천원 ○ 예산편성 요구 사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data-bbox="373 712 1406 93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 기간</th> <th rowspan="2">2024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5년 요구액</th> <th colspan="4">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구비</th> </tr> </thead> <tbody> <tr> <td>우리구 출연금</td> <td>1년</td> <td>18,933</td> <td>17,986</td> <td>17,986</td> <td></td> <td></td> <td>17,986</td> </tr> </tbody> </table> <p>※ 2024년 우리구 출연액 비중은 전국 131억원 중 0.13% 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 2023년 보통세 결산액(149,884,293천원) × 1.2/10,000(출연율) = 17,986천원 ☞ 출연율 : '20년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 '22년이후 (1만분의 1.2)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우리구 출연금	1년	18,933	17,986	17,986			17,986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우리구 출연금	1년	18,933	17,986	17,986			17,986														
출 연 필 요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등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1)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 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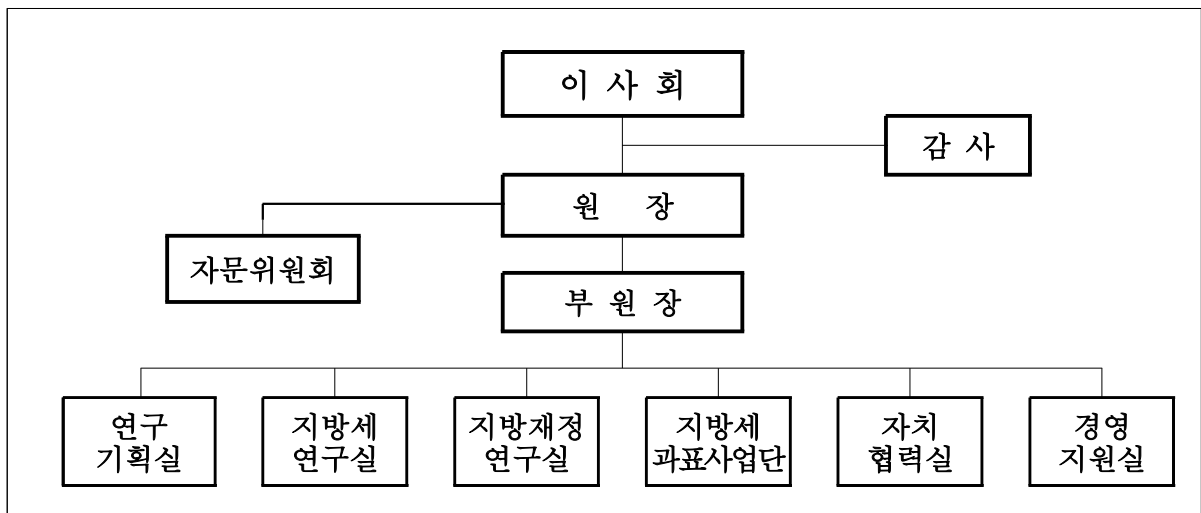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정원 88명 / 현원 71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등
정 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 원	71명	1명	3명	40명	4명	23명
총인원	97명	정원외 인원 26명 (파견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

(조 직) 5실 1사업단



(예 산) 178.1억원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30.8 (73%)	47.3 (27%)	94.0 (53%)	67.1 (38%)	13.1 (7%)	3.9 (2%)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024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3,078,569	8,570,298	4,508,271	3,016,485	444,022	1,047,764
서울	3,199,717	2,653,969	545,748			545,748
부산	746,014	583,445	162,569		20,426	142,143
대구	481,875	371,627	110,248		26,128	84,120
인천	669,357	529,453	139,904		8,833	131,071
광주	291,885	242,827	49,058			49,058
대전	292,306	236,941	55,365			55,365
울산	269,918	188,702	81,217	40,958		40,259
세종	95,188	95,188	0			
경기	3,335,795	1,562,060	1,773,735	1,744,765	28,970	
강원	356,606	213,999	142,606	101,444	41,162	
충북	390,046	195,188	194,858	137,372	57,486	
충남	566,554	294,925	271,629	227,062	44,567	
전북	369,745	210,447	159,298	123,719	35,579	
전남	474,022	265,339	208,683	132,778	75,905	
경북	594,882	304,644	290,238	234,775	55,463	
경남	727,863	404,748	323,115	273,612	49,503	
제주	216,796	216,796	0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7,140	8,277	9,526	10,137	10,844	11,392	10,640	11,161	12,383	13,078
서 울	1,758	1,960	2,318	2,444	2,631	2,833	2,642	2,815	3,139	3,199
부 산	450	529	644	615	665	663	607	675	707	746
대 구	286	348	387	402	427	437	410	433	466	482
인 천	378	429	499	539	595	600	562	560	644	669
광 주	162	214	187	226	231	250	240	249	263	292
대 전	167	206	220	226	233	234	235	247	277	292
울 산	192	219	240	265	269	265	239	227	241	270
세 종	29	53	70	68	91	91	79	87	97	95
경 기	1,747	2,014	2,390	2,570	2,779	3,071	2,830	2,801	3,247	3,336
강 원	175	195	213	248	260	275	253	290	315	357
충 북	191	227	256	273	285	310	306	305	348	390
충 남	271	351	379	417	461	470	416	449	503	567
전 북	195	220	242	255	271	275	271	324	340	370
전 남	215	233	265	298	310	320	320	394	412	474
경 북	340	395	460	472	495	484	455	498	534	595
경 남	482	564	606	634	646	617	596	629	664	728
제 주	101	120	150	184	195	197	179	177	186	216

참고(2)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4년 7월 현원기준)	○ 정원 88명 / 현원 71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 리 직	연 구 직	전 문 직	사 무 직 등	
	정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원	71명	1명	3명	40명	4명	23명	
총 인원	97명	정원의 인원 26명 (과건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								
임 원 (2024년 7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중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이 사	김 진 만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사	이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이 사	김 중 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이 사	최 명 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 사	서 동 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감 사	이 화 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1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11~’24 까지 지 자체가 출연금)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37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064			15,850		1,593		

1 2024년 사업추진 현황

1 연구 사업

□ 2024년 사업 현황

○ 2024년도 130건 과제 수행 ('23년 대비 10건↑)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기획과제 25건 수행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수시	기 타
2024년	130	14	11	90	15
2023년	120	5	14	96	5

□ 추진 사업

○ 지방세·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입법화 지원을 위한 선도연구

- 지역균형발전 지원 정책방안 모색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 기업 세제지원의 효과분석, 지역소멸 대응 균형발전 방향 정립과 세제 재설계 등

- 지방세입 확충 방안 모색

※ 신세원 발굴, 지방세외수입 효율화, 지자체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조례감면, 탄력세율 운영확대)

- 지방세·재정 정책지원 및 지방정부 지원 연구과제

※ 자동차세법 제정방안, 지방세징수법 정비방안, 지방교육세 개편방안, 시가인정액 운영방안, 합성 니코틴 담배소비세 과세 방안 등

○ 수요자 중심 정책지원 사업(연구컨설팅) 추진

- 세수추계, 재정분석, 조례감면, 지방보조금

○ 연구성과 홍보 다각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확대

- 지방세·재정 정책현안을 신속히 분석·대응하는 정기발행물 확대

- 언론사 및 기자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및 지방세·재정 정책 홍보 및 제언 기능 강화 (언론사 기자간담회 확대)

2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추진 사업

- 상업용 부동산 과표 균형성 제고 방안 조사·연구
 - 상업용 표준부동산 가격산정 (9,000동)
 - 상업용 표준부동산 선정기준 마련 등 관련 연구 수행
- 지방자치단체 과표컨설팅 및 과표업무 지원 강화
 - 미공시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수수료 → 무상 지원
 - ※ 우리구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의뢰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29건, 8.8백만원 절감

3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지방세무직 총 48,900명 교육 ('14~ '23)

구 분	합 계	2014~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횟수	418	52	37	39	69	37	55	56	73
교육 인원 (명)	48,900	5,693	4,827	4,312	4,400	2,784	9,300	8,260	9,324

- ※ 우리구 24년 교육 이수 현황(집합 및 온라인 교육)
 - 총 19명(세무과 14명, 징수과 5명)

□ 지방세공무원 교육 강화 추진

- 지방세교육 중장기 계획 보완, 세부 추진 로드맵 제시
 - 「교육·자치협력 분야 중장기 계획」 ('21.7월), 「지방세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23.12월)를 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24.2월)

4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 자문, 고액·중요 사건의 자문회의 개최
 - ※ 우리구 행정소송에 따른 자문 의뢰: 1건(취득세: 321백만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개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특정 쟁점 집중형으로 특화된 교육 실시
-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
 - 대법원의 지방세 분야 주요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배포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사건수	2,224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소송액(억원)	18,096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자 발송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상담,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우수 자료 공유
- 지방세 전문 소식지 「지방세 알림e」 발간
 - 조세심판 결정례와 행안부 유권사례 중심으로 주제 다각화, 지방세 동향 게재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35개 단체(광역 17, 특례 4, 대도시 14) 연찬회 지원
 - ※ 대구시 지방세발전 포럼 및 지방재정 연찬회 개최 지원: 2회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
 - ※ 우리구 신용카드 수납처리 수수료 대납(징수과 12백만원 예산 절감)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 2025년 중점 연구방향 】

-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지방 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모색
- ②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 ③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모색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방안
-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한 세입제도 개편 및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 국가-지방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개편방안 연구 등

□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 인구구조변화, 지역 불균형, 저성장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방의 자립적 재정역량강화 방안 등

□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컨설팅

- 지방재정을 자주성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의 선순환 방안 모색 등

②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2025년 추진계획

- (조사) 시가표준액 가격 조사 (268,000건 → 272,700건)

구 분	2025년(목표)	2024년(목표)	2023년	2022년
합 계	272,700	268,000	223,196	166,108
오 피 스 텔	25,500	25,000	24,272	22,903
상 업 용 부 동 산	112,000	110,000	71,626	21,580
미 공 시 공 동 주 택	5,200	5,000	3,622	3,481
기 타 물 건	130,000	128,000	123,676	118,144

○ (연구) 연구과제 수행 11건 ('24년 9건 → ' 25년 11건)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개선 연구
- 건축물 과표체계 개선 연구 등

○ (지원) 지방자치단체 과표업무 지원 및 과표 관련 사업

- 의견청취·직권변경 가격산정 지원 『신규 사업』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제도 개선 참여 추진 『신규 사업』
- 과표사업 국제교류 추진 및 과표학회 신설 『신규 사업』
-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및 적용 요령 개정 지원
- 지자체 과표업무 컨설팅
- 과표법령집, 지방세 과표연구 발간 및 배부
- 지방세 과표정보 자료관리 기능 개선

3 자치협력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세무공무원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특화·순회교육 실시
- 지방세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연구동아리 지원
- 외국 지방세 비교연수 사업 운영
 -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을 본받아 세정발전 도모,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 자치단체 연찬회 및 모니터 제도 운영
 - 연구원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연구원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적용요령, 판례 등 망라한 교육교재 발간 등

□ 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 지원 사업 운영

- 지방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사업 지원
 - 제도개선 토론회, 워크숍 등 전국단위 합동회의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및 관리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위한 지방세상담 창구 마련
 - 행안부 운영요령, 조심결정, 판례 등 다양한 지방세 사례 등재
-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비용 지원 등

□ 지방세 불복사건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전국단위·고액·중요 불복사건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공동대응책 마련
 - 연구원·행안부 합동회의 개최 및 쟁송 대응 논리 개발
- 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을 위한 자문 지원
- 불복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지방세 불복사건 정보 공유 및 판례 분석 간행물 발간 등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